

##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

안성민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 〈요약〉

여성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율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서 관련분야 여성전문가에 대한 정보의 부족 또는 너무 낮은 탐색비용의 지출,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전문가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정보탐색비용의 지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운영적인 방안들의 모색,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위원 위촉제도의 실시, 그리고 위원 위촉시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 - 즉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육아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공공의 노력 -이 필요하다.

## Strategies for the Expansion of Woma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al Committees

Ahn Songmin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 〈Abstract〉

Due to the governmental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woma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rough passing the Act of Woman's Development, the woma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al committee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But it is still below the expectation level.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s as reasons for the low participation: (1)

the lack of information for relevant woman-experts; (2) low spending for information search for woman-experts; and (3) the low level of relevant woman-experts. Short-term strategies for the expansion of woman's participation are: (1) to give institutional incentives to increase spending for information search for woman-experts; (2) to develop open and fair committee appointment program; and (3) to appoint those who represent citizen's interests as well as experts. Long-term strategy is to improve conditions for woman's participation by reducing woman's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and the aged care.

## I. 서론

우리 나라에서 여성문제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아래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지난 10년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김정숙, 1999). 이는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UN에 의한 여성차별철폐 움직임 등의 영향력으로 가능하여 졌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 등 변화를 위해 필요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많은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다.

이제까지 여성참여에 관한 많은 논의가 여성의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를 지적하고 여성참여의 당위성을 주장, 제도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변화에 필요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수립되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에 관한 논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고 2002년까지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부언의 여지가 없지만 그 이외에도 여성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참여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선 2장에서 효율적인 위원회제도의 제 조건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본 후 4장에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면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

### 1. 위원회제도와 정책결정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정책결정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합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백완기, 1998: 184). 따라서 위원회는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계층적 조직 구조와는 달리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합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 첫째는 시민들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행정의 민주화)이고, 둘째는 시민과 공무원들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능적 분야에서 시민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Zimmerman, 1986; 「위원회편람」, 1992).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제도'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종범 외, 1993). 의사결정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의 곤란은 정보의 부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과 결정의 결과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야기하는 이해갈등이다(안성민, 1997). 정보의 문제는 정책을 둘러싼 인과관계의 확실성 정도를 결정하며, 결정결과에 대한 선호의 일치 정도에 의해서 이해갈등의 정도는 결정된다. 인과관계의 확실성 정도와 결과에 대한 선호의 일치 정도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어려움 정도를 결정한다(Thompson & Tuden, 1959; 안성민, 1997). 만일에 정책을 둘러싼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결과에 대한 선호가 일치하는 경우의 정책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층제는 합리적인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정을 둘러싼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은 종종 오류를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계층제가 가진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의 효율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떨어지게 된다. 첫째로 합리적인 계산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속한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증폭을 가져올 수 있으며, 둘째로 계층제에서 결정의 책임을 특정인이 지게 된다면 합리적인 개인들은 책임회피를 위하여 결정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김영평, 1991).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정회피를 낮추어 줄 수 있기에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인하여 이해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계층제에서 결정의 책임을 특정인이 지게 된다면 합리적인 개인들은 책임회피를 위해 결정을 지연시키고,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형식주의' 혹은 결정을 계속 반복하는 '정책의 비일관성' 등을 보여주게 된다(이종범 외, 1994). 결국 이해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계산에 기초한 계층제의 효율성은 도전 받게 된다. 이해갈등이 심각한 경우,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책임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특정인의 부담을 낮추게 할뿐

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symbol)을 획득하게 하고, 만일 특정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결정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일례로 IMF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재계, 노동계가 함께 노력한다는 중요한 상징을 제공했고,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어떠한 결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 2.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조건들

앞절에서의 논의는 위원회제도가 불확실성의 상황 또는 이해갈등이 있는 상황(혹은 양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계층제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 위원회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위원회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조사한 길종백(1997)은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도 유명무실한 것이 상당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오태석, 1986; 김동오, 1997). 이에 대하여 정홍익과 김호섭은 위원회의 효과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가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위원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적, 제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정홍익, 김호섭, 1991: 439).

인적요인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관련된 변수로서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선정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제도가 불확실성의 상황 또는 이해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계층제의 정책결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부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나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정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또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osen, 1993). 직접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취하는 부문, 구체적인 정책의 직접대상자들로서 정책의 수혜자 또는 정책의 피해자 등을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특정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sup>. 중앙부처의 위원회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1) 정부의 입장을 가지는 부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관련 연구소, 공사, 은행, 협동조합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조직, 위원회, 감독원 등의 공공조직에 속하고 있는 전문가, 관·검사 등이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문에는 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직능전문가, 언론인,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공익단체를 포함시켰으며, 민간부문의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기업, 기업협회, 노동조합, 농민, 어민, 광부와 같은 이해자 등을 포함시켰고,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타로서 제외시켰다(길종백, 1997: 24).

<표1> 중앙정부 부처 위원회의 인적구성 (1991년)

분류	인원	%	분류	인원	%
총계	776	100%	민간인	53	7%
행정공무원	334	43%	직능단체대표	76	10%
언론인	25	3%	회계사	14	2%
법조계	23	2.5%	도의원	27	4%
교수	198	25.4%	체육인	9	1%
전문기관	12	1.5%	예술인	5	0.6%

자료 : 총무처 「위원회편람」 1992, 길종백(1997)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재구성한 것임

- (1) 1991년도 75개의 의결위원회 중에서 49개의 위원회를 분석한 것임
- (2) 1991년도 199개의 심의위원회 중에서 107개의 위원회를 분석한 것임
- (3) 1991년도 80개의 자문위원회 중에서 42개의 위원회를 분석한 것임

<표2> 전라남도 각종위원회의 인적구성

	정부부문	이해관련자들	중간부문	합계
의결위원회 <sup>(1)</sup>	417(78.8%)	34(6.4%)	78(14.7%)	529(100%)
심의위원회 <sup>(2)</sup>	1191(74.8%)	134(8.4%)	268(16.8%)	1593(100%)
자문위원회 <sup>(3)</sup>	366(49.1%)	86(11.5%)	294(39.4%)	746(100%)
합계	1974(68.8%)	254(8.9%)	640(22.3%)	2868(100%)

자료 : 전라남도 지방과, 「각종위원회 정비추진상황」 1996, 김동오 (1997),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49쪽에서 재인용

<표1>에 나타나듯이 중앙정부 위원회에 70%에 가까운 정부부문이 참여하는데 반하여 민간부문의 이해관련자들의 참여는 미미하다.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중간부문의 참여가 39.4%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의결·심의위원회에서는 70%를 넘는 정부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해관련자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표 2>에서 행정공무원이 위원회의 43%를 차지하며 교수가 25.4%, 직능단체대표가 10%를 구성하고 있다. <표2>를 자세한 내용의 파악 없이 <표1>과 같이 세 부문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중간부문에 교수, 언론인, 회계사만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30%가 넘는 위원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통해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이해관련자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위원들이 단순한 유명세나 개인적 친분관계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는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그것도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

으로 지명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정홍익, 김호섭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지적하듯이 “실제로 이름깨나 있는 사람들은 십여 개의 유명무실한 감투를 쓰고” 있고, “실제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의 일에 협조적인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있다(정홍익, 김호섭, 1991: 458). 지방정부 위원회의 위원선정도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전문직 위원의 중복참여의 경우가 많음이 지적되고 있다(김동오, 1997: 58). 이러한 선정방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무산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상징적인 효과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위원회의 효과를 결정짓는 제도적 요인으로 위원회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운영상의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위원회제도는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래 다양한 정보와 이해관계가 표현되고 논의되어야 하기에 신속한 결정은 어려우며, 위원회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절한 인적 구성과 함께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견해들이 토론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들에게 정책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되면 위원들은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논의로 일관하거나 정부대안에 동조적일 수밖에 없다(조석준, 1987: 257; 정홍익, 김호섭, 1991: 445). 정홍익과 김호섭의 조사는 민간위원들이 안전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 또는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9%에 불과한 반면에 ‘불충분’ 또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6%에 달함을 보여주고 있다(정홍익, 김호섭, 1991: 445). 위원들은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전에 안전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32%에 불과하고, ‘불충분’ 또는 ‘매우 불충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67%에 달하고 있다(전게서, 448-449). 또한 조사결과는 위원들이 모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회의시간이 부족하다(63%)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전게서, 448-449).

위원회의 효과를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으로 위원회제도를 둘러싼 상황적 환경, 즉 정부조직의 특성, 문화적·정치적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요청되는 환경변수로서 ‘토론문화’를 들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김영평, 1991), 이해갈 등이 있는 정책대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치열한 논쟁과정이 필요하다. 특정의견에 대한 반대가 마치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반대로서 받아들여지는 토론문화에서는 어떤 의견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우며, 상반되는 의견들 속에서 특정대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논쟁이나 의견대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조사결과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우리의 토론문화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정홍익, 김호섭, 1991: 448). 민주적 토론과 논쟁이 용인되고 상반되는 의견들이 조정될 수 있는 토론문화의 정착이 위원회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위원들을 선정하며, 가급적 위원들의 중복임명을 피한다. 셋째, 위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하여 충분히 안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회의, 그리고 회의시간이 충분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주적 토론문화의 정착이 되어야 한다.

### III.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

#### 1.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논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도를 조사한 보고서가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나왔다. 1984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6년 165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16개로 전체의 9.7%이고 여성위원의 수는 69명으로 전체(3,769명)의 1.8%에 지나지 않으며, 1984년 364개의 위원회 중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35개로 전체의 9.6%이고 여성위원의 수는 156명으로 전체(7,071명)의 2.2%를 차지한다(「국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도 조사」, 1984: 31-44). 1984년의 보고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서 1984년 당시 1급에서 5급 사이의 고급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전체 공무원의 1.1% 밖에 되지 않는 점과 민간 여성전문인력의 위원회 위촉이 부진한 점을 들고 있다(전게서, 33-45). 또한 보고서는 민간인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통한 행정민주화의 토착과 전문가의 지식 활용을 위해 위원회제도가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서 위원회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성적 평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지는 않았다(전게서, 46-47).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에 관한 논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는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계에서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문제의 해결은 여성이 고위 정책결정직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만 평등과 발전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정책결정직과 정당, 기업, 대학, 노조, 직업단체 등의 지도적 지위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김선옥, 김명숙, 1994: 9). 둘째, 여성의 인구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계 및 공직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 당하고 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집행에서도 소외당하여 여성정책의 적실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이명화, 1996: 502). 셋째, 사회 각 분야의 만연적인 불평등과 차별로 인하여 법규상의 남녀평등권의 보장만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의 증진을 기대하기에 어렵기에 불평등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로서 한시적 할당제<sup>2)</sup>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계의 주장은 세계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운동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UN에 의한 여성차별철폐 움직임과도 통한다. 우리정부에 의해 1984년 비준되고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지위와 아동양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여성의 차별은 인간존엄에

2) 독일의 자민당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기술적 쿼터는 평등을 저해하는 중요요인을 제거하지도 않고 증상만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쿼터는 남성후보에 대한 새로운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센, 1994). 여성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에서 김영희와 박현미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헌법 제34조 제3항의 국가목적규정과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궁극적으로 법적 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일정비율할당제는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김영미, 박현미, 1997).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각국에서 여성할당제의 실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김선옥, 김명숙, 1994).

위배되고 사회와 가정의 번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아동의 양육은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의 책임이기에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협약당사국에서 차별적 법의 폐지,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 제거, 적극적 조치에 의한 평등의 증진, 양성의 우열에 근거한 태도, 관습, 편견, 관행의 철폐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할당제와 관련하여 협약의 제4조는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73).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우리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여성개발 부문에 근거하여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으로서 2000년까지 여성위원 비율을 15%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988년 9월 제5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 1989년 8월 25일 국무총리 지시 제12호로 정부내 각 기관에 시달하였다(김선욱, 김명숙, 1994). 그러나 권고수준의 추진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1995년 12월 30일)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적 이행사항으로 전환하였다(‘1997년 여성백서’, 177). 여성발전기본법은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각종 우대조치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정부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던 여성위원 참여확대사업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환하고 목표율 30% 달성시기도 당초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겼다(‘1998년 여성백서’, 161-162).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은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 (위축직 기준)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당초	15%	18%	20%	22%	25%	30%
변경	20%	23%	25%	28%	30%	

자료 : 「1998년 여성백서」, 162

## 2. 여성위원 참여 현황

1984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 1988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계획의 의결,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통과, 그리고 1997년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의 설정·운영 등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에 힘입어 <표4>가 보여주듯이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비율과 위원회



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위원 참여율의 증가는 <표3>에 나타난 참여 목표율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표4>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여성 참여율

연도	위원회 수 (개)			위원 수 (명)		
	전체	여성참여 위원회	참여율 (%)	전체	여성위원	참여율 (%)
1984년 12월	364	35	9.6	7,071	156	2.2
1988년 12월	346	48	13.9	10,645	585	5.5
1990년 9월	355	69	19.4	11,374	1,019	9.0
1992년 9월	375	80	21.3	19,492	1,067	5.5
1994년 9월	330	100	30.1	16,612	1,191	7.2
1995년 9월	324	116	35.5	16,546	1,153	7.0
1996년 9월	362	115	31.8	26,053	2,414	9.2
1997년 9월 <sup>(1)</sup>	310	141	45.5	3,126	324	10.4
1998년 12월 <sup>(2)</sup>	1,206	714	59.2	15,296	1,896	12.4

자료 : 「1996년 여성백서」 142, 「1997년 여성백서」 178, 「1998년 여성통계연보」 360-365,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 (1) 연도별 최소 목표율을 적용하기 시작한 1997년도부터는 2005년까지 여성 참여율 30% 달성이 불가능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달성 가능한 위원회의 위촉직 기준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을 산출하였음
- (2) 1998년 통계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 12월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비중은 59.2%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한 편차가 있다. <표5>에서 보여주듯이,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위원회 등은 모든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높았던 교육, 문화, 보건, 복지영역 —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의 위원회들은 여전히 여성 참여 위원회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의 부처도 높은 여성참여 위원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참여 위원회의 비율이 낮은 부처들은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국방부,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과 과학, 경제, 산업영역의 부처들이다. 특히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경제, 과학, 산업과 관련된 부서들이 낮은 여성참여 위원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아직 여성들의 정책결정의 참여가 미흡함을 나타낸다.

<표5> 정부 각 부처의 여성참여 위원회의 현황

여성참여 위원회의 비율	부서명
100%	감사원,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50%이상 100%미만	국무조정실(75%), 법제처(50%), 공정거래위원회(66.7%), 통일부(66.7%), 외교통상부(50%), 교육부(50%), 문화관광부(80%), 정보통신부(71.4%), 보건복지부(86.5%), 환경부(63.2%), 노동부(71.4%), 농촌진흥청(50%), 특허청(71.4%), 철도청(66.7%)
30%이상 50%미만	국가보훈처(40%), 법무부(40%), 행정자치부(35.7%), 농림부(42.3%)
30%미만	비상기획위원회(0%), 국민고충처리위원회(0%), 금융감독원(0%), 재정경제부(20%), 국방부(4.3%), 과학기술부(25%), 산업자원부(16%), 건설교통부(16.7%), 해양수산부(0%), 예산청(0%), 국세청(25%), 관세청(0%), 병무청(0%), 기상청(0%), 산림청(0%), 중소기업청(0%), 식품의약품안전청(0%), 해양경찰청(0%)

주 : 1998년 6월 30일 기준의 자료

자료 : 「1998년 여성통계연보」 364--365를 재구성한 것임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997년 중앙부처 및 시·도의 272개 위원회가 2005년까지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 30%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1997년 여성백서」, 179). 이는 전체 1186개 위원회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6>에는 각 위원회가 밝힌 불가능한 사유이다.

<표6> 30% 달성 불가능한 위원회의 수와 이유

구분	관련분야 전문가 부족	한시 운영 (향후 폐지)	특정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 (당연직 성격)	기타
중앙부처	92 (82.9%)	6 (5.4%)	13 (11.7%)	
시·도	109 (67.7%)	12 (7.5%)	33 (20.5%)	7 (4.3%)
합계	201 (73.9%)	18 (6.6%)	46(16.9%)	7 (2.6%)

자료: 「1997년 여성백서」 179 재구성

<표6>에 의하면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부족과 당연직 임명의 경우 등이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인 여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 인터넷으로 전문여성 인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998년 여성백서」, 166).

## IV.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 1. 단기적 대응전략 - 위원회 위촉제도의 검토와 여성 대표성의 고려

앞장에서 살펴본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며,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성참여 위원회 비율의 편차는 특정 부처에서 여성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여성참여의 정도가 상당히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운 정부위원회들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여성의 부족이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여성의 부족'문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위원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이 관련분야 여성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상, 혹은 정보탐색비용(Simon, 1972)의 지출이 낮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표5>에서 보여주듯이 중소기업청의 6개 위원회에는 여성이 참여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는 2개의 위원회에 모두 여성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참여의 확대를 저해하는 것이 관련분야 여성전문가의 부족문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전문가를 탐색하지 않고 정보탐색비용(information search cost)의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보탐색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문여성 인력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제공의 노력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원 위촉제도가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하여 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다. <표5>에서 여성참여위원회의 비율이 높은 부서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높았던 교육, 문화, 보건, 복지영역의 부서들이며, 여성참여위원회의 비율이 낮은 부서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낮았던 부서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장에서 지적한대로 위원의 위촉이 기존의 관행,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단순한 유명세 등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 위촉권을 가진 기관들이 기존의 관행이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존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기관의 관심과 협조 정도에 따라 여성참여의 정도가 변화한다면,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독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겠다. 한편으로는 기관들이 충분한 정보탐색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incentives)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회 위촉제도가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다. 충분한 정보탐색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기관별 목표율 달성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기관과 각종 민간단체에 공포하는 방안('1998년 여성백서', 165-166)과 함께 여성참여율의 달성을 위원회 운영비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위촉제도가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연구가 소홀하였던 위원회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하겠다.

둘째, 실제로 관련분야 여성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7년 여성교수는 12,120명으로 전체 53,300명중에서 22.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73). <표7>은 전체교사 중 여교사의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98년 초등학교 교사의 58.5%, 중학교의 49.9%, 고등학교의 24.3%가 여교사이다. 전체교사 중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의 비중

은 아직도 미비하다.

<표7> 학교급 및 직위별 여교원 비율

		전체교사		교장		교감		보직교사		평교사	
		계	여교사	계	여교사	계	여교사	계	여교사	계	여교사
초등	80	117,901	36.1	6,448	1.8	6,353	4.0	27,729	8.2	77,341	51.6
	98	133,304	58.5	5,679	4.9	6,353	7.5	27,256	33.4	94,016	72.5
중학교	80	53,568	32.2	1,745	3.8	2,027	5.8	10,242	6.0	39,554	41.6
	98	90,174	49.9	2,430	7.1	2,742	7.0	18,747	27.9	66,255	59.5
고등	80	47,841	16.2	1,207	4.7	1,286	1.7	8,067	2.6	37,281	20.0
	98	101,564	24.3	1,843	4.1	2,006	1.4	20,327	9.2	77,388	29.4

자료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여성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급공무원의 비중은 아직도 상당히 낮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1,891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857명으로 2.7%에 불과하다.

<표8> 직급별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 (97년 12월말)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체	290,656	101	402	1,265	7,628	22,495	67,085	85,138	67,956	38,586
여성	58,363	0	3	13	120	721	4,465	15,601	22,029	15,411
점유율	20.1	0	0.7	1.0	1.6	3.2	6.7	18.3	32.4	39.9

자료 : 「1998년 여성백서」, 169

이러한 통계결과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구조적 여성차별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분야 여성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된다. 여성할당제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부족한 여성전문가들로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점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위원회에 여성할당제의 적용을 폐기해야 할까? 본 논문의 2장에서 위원회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선정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제까지 정부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전문성만이 강조되어 온 것 같다. 정책결정이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문제의 해결이라 할 지라도 정책으로 인해서 이

득을 보는 집단과 손실을 입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실행의 순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잘못된 정책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영평, 1991). 정부위원회의 위원 위촉에서 대표성을 전문성과 함께 선정기준으로 한다면, 부족한 여성전문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성을 전문성과 함께 위원 선정의 기준이라고 할 때, 여성들이 지역사회 혹은 특정 이해관련자의 대표로서 역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이는 여성의 정치화와 연결된 주제로서, 요코 카미카와는 '여성의 지역개발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였다.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나가는 일종의 생활조합과 같은 여성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집단운동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짐에 따라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요코 카미카와, 1994). 요코 카미카와의 주장은 미약한 여성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영역에서부터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관심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치화와 그에 따른 여성에 의한 지역사회의 대표화가 가능하여진다면, '여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논의의 실마리로서 반상회나 부녀회를 고려할 수도 있다. 현재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반상회 또는 아파트의 부녀회 등은 제각기 조직력에 차이는 있지만 여성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조직들로서 생활환경의 문제, 주차장 문제, 주민복지 등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반상회나 부녀회가 단순히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다른 반상회, 부녀회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고, 공동의 지역문제의 해결에 노력할 때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여성에 의한 지역사회의 대표화가 가능하여 질 수 있겠다.

## 2. 장기적 대응전략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여건의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 1990년 47.0%, 그리고 1997년 49.5%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1997년 75.6%)과 비슷한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례할 만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9>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997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계
여자	13.0%	66.4%	54.1%	50.9%	60.5%	67.0%	62.2%	58.0%	49.5%
남자	8.6%	56.9%	88.1%	96.8%	96.9%	96.2%	94.7%	91.2%	75.6%

자료 : 「1998년 여성통계연보」, 161

<표9>에 의하면 남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30세부터 54세까지는 90%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지만, 여자들은 20-24세에는 남자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66.4%)을 보이지만 25세부터 34세까지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35세부터 점차 증가하여 40-44세에는 다시 67%를 회복한다. 이는 남자들의 교육기간이 여자들보다 길다는 것과 여자들이 결혼과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고 떠나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더라도 전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표10> 부인의 활동상태별 실제 부부간의 가사분담 실태 (1998년)

	부인이 전적으로 함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고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함
모든 가구 <sup>(1)</sup>	44.3%	46.5%	5.7%	2.0%	0.2%
취업주부 가구	37.6%	50.0%	7.9%	2.6%	0.2%
전업주부 <sup>(2)</sup> 가구	51.2%	43.5%	3.3%	1.3%	0.2%

자료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3

- (1) 부부가 함께 사는 각의 부인만 조사한 것임
- (2) 전업주부는 활동상태가 '가사와 육아'인 주부를 포함

<표10>은 부인들이 주로 가사분담을 맡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에게 과도한 가사분담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기에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웨덴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일반육아휴직제도 등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급직장과 가정책임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거의 남성수준 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리델, 1994). 하지만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유급직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 1차적인 책임을 떠맡고 있기에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직장에서 남성보다 앞서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나눠 가질 때까지는 여성의 의사결정참여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리델, 1994).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나눠 갖고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남녀평등의식의 고취와 남성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분담과 함께 여성에게 맡겨져 왔던 육아와 노인 보살피기 등 기존의 여성의 책임영역이 국가와 사회로 이양되어야 한다(헤르네스, 1989).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여건의 개선은 남녀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나눠 갖기 위한 남녀평등의식의 고취, 남성의 평등한 가사분담, 그리고 여성의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육아와 노인복지 등을 공적 영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다. 이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폭넓은 복지정책의 실행이 없이는 여성의 가사책임을 낮출 수 없고,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

간을 요구하는 것이며 폭넓은 복지정책의 실시는 국가경제의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단시일에 달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폭넓은 복지정책의 실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가사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가정주부들에게 여성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이 토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확산과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 V. 결론

이제까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참여를 확대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인 여성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이 관련분야 여성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너무 낮은 정보탐색비용을 지출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탐색비용의 지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운영적 방안들의 모색과 함께 위원 위촉제도가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겠다. 둘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성과 함께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그 가운데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여성의 정치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여건은 남녀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나눠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한다면, 남녀평등의식의 고취, 남성의 평등한 가사분담, 그리고 여성의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육아와 노인복지 등을 공적 영역으로 바꿀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추구하고 제도적 개선, 폭넓은 복지정책의 실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즉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운영적 개선 노력과 함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여성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교육부 (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 김선옥, 김명숙 (1994),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숙 (1999), 「한국여성정치발전 10년에 대한 고찰」,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5-19
- 김종백 (1997),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김동오 (1997),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평 (1991),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영희, 박현미 (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97년 겨울): 5-20
- 리텔, 비르키타 (1994), 「지방정치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연구」(94년 겨울): 171-187
- 백완기 (1998), 「행정학」, 서울: 박영사
- 안성민 (1997), 「정책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접근」, 「고려대 사회과학논집」22, 171-194
- 안센, 실케 (1994), 「지방정치에의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정당정책」, 「여성연구」(94년 겨울): 147-15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김선옥, 김명숙 (1994),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의 부록, 171-181
- 여성특별위원회 (1998년), 「1998년 여성백서」
- 오태석 (1986), 「위원회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직할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요코 카미카와 (1994), 「여성의 지역개발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세력화」, 「여성연구」(94년 겨울): 155-170
- 이명화 (1996),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시론적 접근」, 「96년 연례학술논문집 3」, 한국정치학회
- 이종범, 박통희 (1993), 「위원회제도와 국회운영의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 12대와 13대 국회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65, 1-47
- 이종범, 안문석, 염재호, 박통희 외 (1994), 「딜레마이론」, 서울: 나남출판
- 정무장관(제2)실 (1996년), 「1996년 여성백서」
- 정무장관(제2)실 (1997년), 「1997년 여성백서」
- 조석준 (1987),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정홍익, 김호섭 (1991),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행정학보」제 25권 제2호, 437-464
- 총무처 (1992), 「위원회편람」
- 통계청 (1998), 「1998년 여성통계연보」
- 통계청 (199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여성개발원 (1984), 「국내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도 조사」
- 헤르네스, 헬가 마리아 (1989), 「여성과 복지국가: 사적의존에서 공적의존으로의 변화」, 앤



- 쇼유스틱 사쑤(편저)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영역의 변화」, 서울: 한국 여성개발원
- Rosen, E. D. (1993), *Improv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Concepts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Simon, H. A. (1972),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in C. B. McGuiger and R. Randner(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61-176
- Thompson, J. D. and A. Tuden, "Strategies, Structures, and Processes of Organizational Decision," J. D. Thompson and Others, eds., *Comparative Studies in Administration* (1959),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Zimmerman, J. 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sed*, New York: Praeger